

- 감사시간 : 2017. 7. 4 ~ 7. 7 (4일)
- 감사범위 : 2014. 6. 1. ~ 2017. 6. 30.까지 추진한 업무전반
- 감사반원 : 감사팀장 외 2명

- 주민센터 운영실태 전반
- 세출예산 집행실태 및 물품구입 등 적정여부
- 저소득층 생활보호지원 대책의 효율적 추진실태
- 각종업무(서무,주민등록,민방위,청소 등) 추진실태

구 분	처분 현황 (건)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	비 고
		계	시정	주의	계	추징· 회수 (세입)	환급· 감액		
계	13	11	6	5	2	2			

【붙임】 처분지시서 1부.

【붙임】

인천광역시 남구 시정 요구

제 목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송의1·3동

관 계 분 야 주민자치

○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수강료 및 사용료의 징수·감면·환불) 제 1항에 의하면 수강료는 접수기간 중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과 동시에 위원회가 징수하며,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입금 및 출금이 자유로운 금융기관에 당일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오전에 징수한 수강료는 오후에, 오후에 징수한 수강료는 익일 오전까지 입금처리하며, 수강료를 징수한 경우 별지 제 6호 서식의 수입결의서와 별지 제 10호 서식의 회계출납부를 작성·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 송의1·3동에서는 감사대상기간인 2014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회계출납부를 작성·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송의1 3동장은

[시정]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규정을 숙지하도록 관련자 업무연찬 하시고, 향후 회계출납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의 요구

제 목 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 등록 직권조치 절차 부적정

기 관 명 승의1·3동

관 계 분 야 주민등록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내지 제31조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르면 거주지를 이동한 후 14일이 지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 사실조사서에 의거 조사한 후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주민에게 사실과 일치되도록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최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기간 종료 후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를 하여야 한다.

○ 최고나 공고를 하여도 정하여진 기간내에 신고를 아니하는 자는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또는 관계 공무원)의 사실 확인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직권조치(거주불명 등록)하여야 하며 직권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하고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14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 승의1·3동에서는 [표]와 같이 2015. 1. 16 무단전출의 이유로 최고를 실시하면서 정○○, 김○○, 서○○ 3명에 대하여 주민등록을 사실과 일치하게 신고를 촉구하는 최고장을 발송하지도 않고, 2015. 1. 27. 최고장을 통지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김○○, 서○○ 전출)에 대하여 공고를 실시한 후, 2015. 2. 5 정○○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의 사유로 직권조치를 실시하였다. 또한, 직권조치사항을 본인에게 통지한 후 통지할 수 없을 때에 공고를 실시하여야 하나, 직권조치의 통지와 공고를 동시에 실시하여 직권조치 절차를 부적정하게 하였다.

[표]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부적정 현황

연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최고일	공고일	직권조치일 (공고일)	비고
1	정○○	-	남구 셋골로 ○	2015.01.16	2015.01.27	2015.02.05	
2	김○○	-	남구 셋골로 ○	2015.01.16	-	-	전출일자 기재
3	서○○	-	남구 셋골로 ○	2015.01.16	-	-	전출일자 기재

조치할 사항 승의1 3동장은

[주의] 관련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하도록 업무연찬 하시고 향후 주민등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의 요구

제 목 전입신고 사항의 사후 확인 소홀

기 관 명 승의1·3동

관 계 분 야 주민등록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접수한 동장은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전입신고 확인서)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통장에게 보내고

○ 통장은 전입신고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서명한 후 그 결과를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받은 동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서명 또는 날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동에서 받은 경우에는 생략 가능

○ 또한, 통장의 전입신고 확인 결과에 따라 신고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사실조사 후 주민등록법 제2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를 하여야 한다.

○ 승의1·3동의 2015년 8월, 2017년 5월 전입자에 대한 전입신고서 사후확인서를 확인해 본 결과 [표1]과 같이 2015. 8월 전입신고 114세대 중 12세대, 2017. 5월 전입 195세대 중 38세대의 사후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확인서 미존재), [표2]와 같이 전상진 등 4명은 통장의 사후확인서 확인결과 비거주자로 통보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사실조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전입신고 사후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1] 전입신고 사후확인 현황

기간	전입신고 건수	사후확인 실시	사후확인서 미실시(미존재)	비고
15.08.01~15.08.31	114	92	12	
17.05.01~17.05.31	195	157	38	

[표2] 주민등록신고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현황

전입일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확인내용	비고
15.08.20	전○○	-	셋골로 ○	비거주	
15.08.27	서○○	-	석정로 ○	비거주	
15.08.28	김○○	-	경인로 ○	비거주	
17.05.10	이○○	-	인중로 ○	비거주	

조치할 사항 승의1 3동장은

[주의] 관련규정에 따라 전입신고 사후확인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계 공무원
업무연찬 하시고 주민등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의 요구

제 목 자체교육 인정자 교육훈련 사항 미 입력

기 관 명 승의1·3동

관 계 분 야 민방위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자체 교육훈련 인정 등) 규정에 따라 그 승선·재직 또는 피교육 중인 기간의 민방위 교육훈련은 소속 선장이나 직장의 장이 실시하는 자체 교육훈련으로 갈음하고, 소속 선장이나 직장의 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 교육시간 이상의 자체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체 직장 교육훈련 확인서를 해당자의 거주지 읍·면·동장이나 소속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 승의1·3동에서는 2015.11.24. ○○○○(주)에 송부한 이○○(민방위 3년차)의 교육훈련사항이 기재된 자체교육훈련 확인서를 “승의1·3동-○○○호”로 접수를 하였다.

○ 그럼에도 이를 민방위 교육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 위 민방위 대원이 2015년도에 이수하여야 할 교육 훈련은 불참처리 되었고, 이로 인해 2016년도 민방위 대원 편성시 민방위 연차가 조정되지 않게 되어 전년도와 동일한 3년차로 편성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승의1 3동장은

[주의] 민방위 자체교육 훈련 대상자 명부 관리 및 교육훈련 실시 확인·지도 등 민방위 교육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시정 요구

제 목 민방위 당연제외자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승의1·3동

관 계 분 야 민방위

○ 「민방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하고,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 소년보호직공무원, 군인, 군무원, 예비군,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乘船)하는 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島嶼僻地)에서 근무하는 교원, 현역병 입영 대상자, 학생,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심신 장애인, 만성 허약자는 제외된다.

○ 아울러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5급으로 판정되면 전시근로역으로 군복무 또는 예비군 등이 면제되어 만 20세부터 민방위대로 편성·관리되고, 6급으로 판정되면 군복무, 예비군 및 민방위까지 편성 제외되며, 7급으로 판정되면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등급판정이 되기 전까지는 만 20세부터 민방위대로 편성·관리, 이후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승의1·3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당연 제외자중 [표] 2명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최○○, 박○○은 전시근로역 병역 처분으로 민방위 편성대상자 임에도 현역병 입영대상자 당연제외자로 부적정하게 편성·관리하였다.

[표] 당연제외자 부적정 관리 현황

연번	성명	생년월일	당연제외 정보		병역처분 확인결과		비고
			제외일자	사유	일자	처분내용	
1	최○○	-	03.12.30	현역병 입영대상	06.01.01	전시근로역	
2	박○○	-	10.01.01	현역병 입영대상	10.10.22	전시근로역	

조치할 사항 승의1 3동장은

[시정] 민방위 당연제외자에 대한 관련 공부·사실 확인 등을 통해 적법한 자원편성과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류 편성된 민방위 자원은 재편성·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시정 요구

제 목 「통장회의 참석수당」 및 「반장 명절상여금」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승의1·3동

관 계 분 야 회계

○ 인천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③항에 의하면 지출원은 (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1.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2. 운영수당 중 일·숙직비
3. 업무추진비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4.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로 지급하는 경우
5. 공무원여비

○ 그러나, 승의1·3동에서는 통장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면서 회의에 참석한 통장인 정당한 채주에게 개인별로 지급하여야 하나, 통장자율회 회비 모금을 위한 승의1·3동 통장자율회 요구(동의)하에 2014년 154명에 대한 참석수당 3,080천원, 2015년 263명에 대한 참석수당 5,260천원, 2016년도 263명에 대한 참석수당 5,260천원, 2017년도 129명에 대한 참석수당 2,580천원을 당시 승의1·3동 통장자율회장 명의 계좌로 참석수당을 입금하였다.

○ 또한 [표] 와 같이 반장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계좌입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반장 명절 상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표] 반장 명절상여금 지급현황

지급일	적 요	지급인원	지급금액(원)	비고
계		516명	12,900,000원	
2014.09.03	2014년 추석 명절 반장수당	107	2,675,000	
2015.02.11	2015년 설 명절 반장수당	107	2,675,000	
2015.09.18	2015년 추석 반장수당	102	2,550,000	
2016.01.29	2016년 설 명절 반장수당	100	2,500,000	
2016.09.05	2016년 추석 명절 반장수당	100	2,500,000	

조치할 사항 승의1 3동장은

[시정] 관련 규칙에 의거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 되도록 관련자 업무연찬 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시정 요구

제 목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승의1·3동

관 계 분 야 회계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은 별도의 시간외 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 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 승의1·3동에서는 [표] 와 같이 병가, 휴직 등으로 실근무일수가 15일에 미달하는 직원 3명에 대하여 299,750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초과근무 수당 정액분 지급 부적정 현황

대상자	지급월	정액분 지급시간	지급금액	근무미달일수	회수금액	비 고
				계	299,750	
이○○	15.02	10시간	93,320	28일 (근무일수 0일)	93,320	
김○○	15.11	10시간	93,320	26일 (근무일수 4일)	68,430	
	15.12	10시간	93,320	31일 (근무일수 0일)	93,320	
문○○	15.11	10시간	83,780	8일 (근무일수 7일)	44,680	

조치할 사항 승의1 3동장은

[시정] 「지방공무원보수처리지침」 준수하여 초과근무 수당 집행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초과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은 회수·반납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시정 요구

제 목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적정

기 관 명 승의1·3동

관 계 분 야 회계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각 업무추진비 공통사항으로 기관 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또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중 축의·부의금품의 지급범위에 결혼 또는 사망인 경우에 가능하며 지급대상자는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되어 있다.

○ 그러나, 승의1·3동에서는 [표]와 같이 환경미화원 형제상에 부의금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

[표] 기관운영비 부적정 지출 현황

집 행 일	집 행 내 역	금액	비고
2015.6.28	도로환경미화원 ○○○ 직원 형제상 부의금 지출	50,000원	

조치할 사항 승의1 3동장은

[시정]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수하여 업무추진비가 집행되도록 업무연찬 하시고 부적정하게 지급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반납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의 요구

제 목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부적정

기 관 명 승의1·3동

관 계 분 야 회계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부서운영 공통 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나

○ 승의1·3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부서 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로 사용하거나, 전체 직원에 대한 사기 양양 경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일부직원을 위한 방석구입 및 사무용품 구입하는 등 부적정한 회계 집행을 한 사실이 있다.

[표] 업무추진비 부적정 지출 현황

적 요	집행액 (원)	집행일	집행내역	예산과목		비고
				편성목	통계목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방석 구입비 지출	26,000	2014.08.21	방석	업무 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방석 구입비 지출	25,000	2015.01.05	방석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방석 구입비 지출	30,000	2015.02.23	방석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방석 구입비 지출	55,000	2016.02.17	방석			
물품구입	48,620	2016.10.31	사각접시등 구입			
주민자치센터 청소용 물품구입	109,380	2016.11.14	마포걸레 등			
물품구입	19,300	2016.11.16	검정봉투			
물품(정보롤 등) 구입	50,000	2016.11.30	정보롤 등			
물품(반코팅장갑) 구입	105,000	2016.12.15	반코팅장갑			
물품(복사용지) 구입	211,500	2016.12.23	복사용지			

조치할 사항 승의1 3동장은

[주의]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수하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집행되도록
업무관련자 업무연찬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시정 요구

제 목 장애인 자동차 표지관리 미흡

기 관 명 승의1·3동

관 계 분 야 사회복지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제27조(장애인사용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 및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의하면,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형제자매,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 위와 같이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및 발급된 자동차 표지는 신청 및 발급사항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동장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권의 변동,말소,차량번호의 변경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파악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 명의의 차량일 경우는 차량소유자의 보호자의 주민등록 변동사항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 회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또한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주민등록을 변경한 경우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차량을 장애인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표지를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함에도

○ 승의1·3동에서는 전○○ 등 7명은 보호자 명의의 차량으로 감사일 현재 대상자와 보호자가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 되어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 등의 업무에 미흡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승의1 3동장은

[시정]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및 정기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의 요구

제 목 관용차량 정비대장 미 작성

기 관 명 승의1·3동

관 계 분 야 관용차량관리

○ 인천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4조(기록관리)에 의하면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 7호 서식 차량정수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하며, 구 산하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 1호 ~ 2호 : 생략
3. 차량유류수불부 : 별지 제 10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 : 별지 제 11호 서식
5. 차량정비대장 : 별지 제 12호 서식

○ 그러나, 승의1·3동에서는 [표] 와 같이 4건에 대해 관용차량을 수리하고 차량정비대장에 기록 관리하지 아니하였다.

[표] 차량 수리 등 현황

예산과목	일자	적 요	금액(원)	비고
공공운영비	2014.11.05	동 관용차량 수리비 지출 (타이어 펑크)	123,200	
공공운영비	2014.12.08	동 관용차량 타이어 교체 구입	352,000	
공공운영비	2015.07.24	관용차량 와이파블레이드 및 타이어수리	37,400	
공공운영비	2015.10.28	관용차량 적재함 수리	192,500	

조치할 사항 승의1 3동장은

[주의] 「인천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의거 관용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